#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84

발의연월일: 2020. 10. 5.

발 의 자: 장경태·김남국·오영환

이용빈 · 이원택 · 장철민

전용기 · 정청래 · 정춘숙

최종윤 · 한병도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가 시공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제출 및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음.

특히, 라돈은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, 생활환경정 보센터에서 전국 실내 라돈 지도를 공개하고 있음.

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지역 전국 실내 라돈은 2012년(겨울) 전국 평균 124.9 Bq/m³에서 2014년(겨울) 102.0 Bq/m³, 2016년(겨울) 95.4 Bq/m³, 2018(겨울) 72.4 Bq/m³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최근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외기차단 기능이 강화되고, 대리석 등 천연자재 사용이 늘면서 신축 아파트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, 입주민의 민원 및 불안 심리 증가를 야기하고 있음.

이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기관을 환경부 등록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제한하고,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서 입주민 참여로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시공자는"을 "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"으로, "측정하여"를 "입주민(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)의 입회하에 측정하여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	제9조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
질 관리) ① 신축되는 공동주	질 관리) ①
택의 <u>시공자는</u> 시공이 완료된	<u>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</u>
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<u>측정</u>	<u>하는 자로 하여금</u>
<u>하여</u>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	입주
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	민(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)의
군수・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입	입회하에 측정하여
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	
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	
한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